

운영직(안내) 채용 공고

우리 축산물의 품질향상, 안전 축산물 유통으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최소화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군 (직급)	채용 인원	근무 시간	급여 및 복리후생	수행 예정 업무	근무지
운영직 (주임)	1명	8h/日	연봉 2,300만원 내외 (세전, 중식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 포함)	고객안내 및 출입 인원·차량 관리 업무	세종시 본원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
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는 면직 가능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세부내용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운영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내규에 따른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결격사유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주)} 에 해당하는 자

주)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신체검사) ② 원장은 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1. 활동성 폐결핵
2. 매독
3. 중증고혈압(수축기 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혈압 110mm/Hg이상인 자)
4. 삼출성 및 만성 유착성 녹막염
5. 심장판막증
6. 만성신장염
7. 중증당뇨병
8. 악성빈혈
9. 양안 교정시력 각각 0.3이하인 자
10. 양쪽 귀가 심한 청력장애 또는 난청인 자
11. 정신이상 및 박약자
12. 각종 만성 전염병자
13. 색각이상자(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에 한한다)
14.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3. 채용방식(절차) 및 일정

가. 채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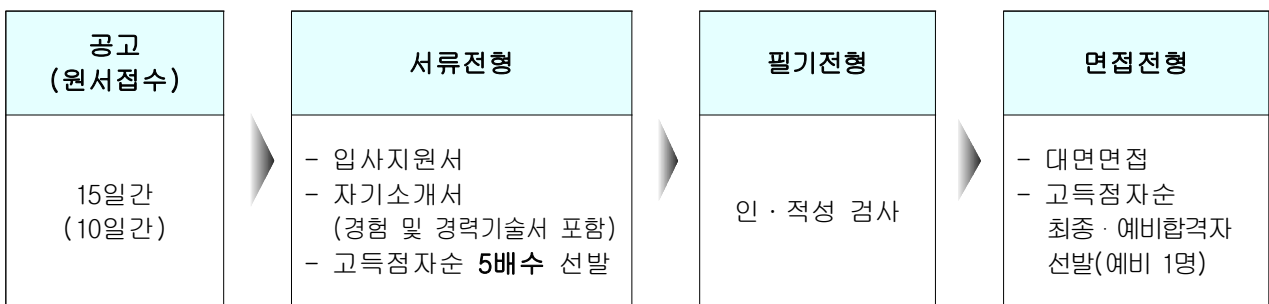
○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의 주요내용>

- ①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 등의 경우에는 요구 가능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 학력 등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 ② 면접전형: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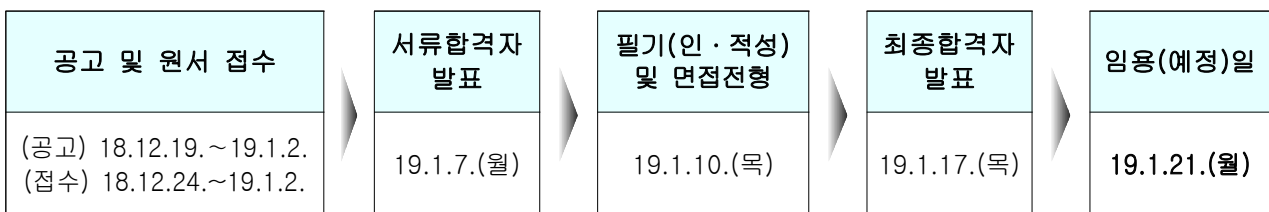
나. 전형절차

○ 서류, 필기(인·적성 검사), 면접



다.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 전형일정



※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잡알리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등

(원서접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방문접수 불가)

라. 전형별 심사계획(안)

전형단계	심사항목 및 배점	선발 기준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00점)	서류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 5배수 이내
필기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시 참고
면접전형	대면면접(100점)	고득점자순 선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소견이 있는 경우,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마.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구 분	적용절차	내 용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	만점의 5% 또는 10% 이내 가점
장애인	서류·면접	만점의 5% 가점
이전지역인재	서류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참고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20%

-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비율이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 ‘-5점’ 이내의 불합격 이전지역인재 중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처리

(예시) 서류합격자 커트라인의 총점(서류점수 + 가점)이 80점일 경우

→ 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으로 인정

* (붙임2) 채용전형별 우대사항 적용대상 참고

※ 동점자 전원 합격

4. 최종 합격자의 결정

-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면접점수 동점자는 면접 심사항목 중 ①인성 및 적성, ②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 (입사포기자에 따른 예비합격자 인원) 차순위 1명
 -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5.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온라인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로 대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격증은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등록번호 등 기재
- 면접시험 시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1부
기타서류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자격증명원 및 경력증명서

- * 주민등록초본·등본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자만 제출
- **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 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확인 및 신원조회에 사용되며, 면접위원회에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6. 임용예정일 : '19. 1. 21.[월]

※ 임용일은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예비합격자: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운영기간
 - (입사포기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기간까지 예비 순번에 따라 차순위 1명 채용
 - (부정합격자 발생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9. 기타

-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됨
- 우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서류접수 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5)로 문의

붙임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채용전형별 우대사항 적용대상 1부.

3. 우리원 「인사규정」 1부. 끝.

입 사 지 원 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사항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주십시오.

지원분야			
성명	(한글)	비상연락처	
현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우대사항	☐ 장애대상 ☐ 보훈대상 ☐ 지역인재		

2.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인 기술/전문/민간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3. 경력 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고객안내 또는 출입인원 · 차량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그 외 모든 경력사항은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4. 직무관련 기타 활동

* 직무관련 기타 활동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고객안내 또는 출입인원 · 차량 관리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활동기간	소속조직	주요역할	활동 주요내용

자 기 소 개 서

1.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500자 내외, 12점)

2.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주시요.
(400자 내외, 12점)

3. [대인관계능력]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300자 내외, 12점)

4. [조직이해능력] 우리 기관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주시요. (400자 내외, 12점)

5. [직업윤리]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300자 내외, 12점)

6. 경험 및 경력기술서(2,000자 내외, 40점)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내용, 소속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결과 등 작성

[주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본인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작성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귀 원과의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귀 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고용계약 유지,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기재한 정보, 기타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정보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u>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시 까지</u>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u>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고용계약 유지,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을 위하여 보유·이용</u>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심사 및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채용 심사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후 본인이 기재·제출한 선택적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동의 여부	▶귀원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기재 시에 한함) - 민감정보: 장애 관련 정보, 국가보훈대상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채용전형별 우대사항 적용대상 (※3-마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전문개정 2011. 9. 15.]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3. 이전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 2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2. 용어의 정의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학교의 세부기준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지역 인재의 세부기준

□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가.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가.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나.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나.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인사규정」 ※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1조의2(피해자 구제) <신설 2018. 7. 5.> ① 원장은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를 파악하여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1.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서류전형 면제
2.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필기전형 면제
3.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자 채용

③ 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한다.

1.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서류전형 재실시
2.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필기전형 재실시
3.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 : 면접전형 재실시

④ 원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 9. 기타

제21조(응시제재 및 합격취소) ① 채용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4. 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채용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